



: 2021-03-12

## 서울 행정 법 원

### 제 3 부

### 판 결

사 건 2019구합83625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이인형, 남희용, 김서경  
피 고 보건복지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심혜진  
변 론 종 결 2020. 8. 21.  
판 결 선 고 2021. 1. 8.

### 주 문

1.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참여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9. 10. 4.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한 사업비 환수



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 이 유

### 1. 처분의 경위

가. 보건복지부는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6. 4. 18. 'D' 연구개발과제(과제번호 E)에 관하여 주관연구기관인 F대학교 산학협력단과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를 해당연도 협약기간으로 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을 체결하였다.

나.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은 위 연구개발과제의 제2세부과제인 'G'(이하 '이 사건 연구과제'라 한다)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B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수로서 이 사건 연구과제의 세부연구책임자로 참여하였다. 이 사건 연구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기간은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였고 이 사건 연구과제의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는 99,550,000원이었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 8. 15.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참여연구원들의 인건비가 용도 외 사용되었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하였고, 위 신고는 보건복지부를 거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이첩되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결과 '이 사건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 5명 중 한국인 학생 3명의 인건비 통장을 수거하여 통합관리하고 그 중 일부는 인건비로 지급하고 일부는 연구실 공동경비로 활용한 사실, 외국인 학생 2명의 인건비 통장은 통합관리하지 않았으나 연구실 공동경비로 해당 학생들의



등록금을 선납해주고 추후 인건비를 받아 갚게 하거나 일부를 연구실 공동경비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 질환연구분야 전문위원회는 2019. 8. 6.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행정제재 심의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연구과제 연구개발비 중 37,650,000원이 용도 외 사용되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5년,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사업비 환수 37,650,000원 및 제재부가금 부과 7,530,000원의 제재를 의결하였다.

**■ 용도 외 사용금액: 37,650,000원(해당연도 연구개발비 99,550,000원의 37.82%)**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9,055,000원(외국인 학생 2명 H, I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28,595,000원(한국인 학생 3명 J, K, L의 인건비 및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위 37,650,000원에 포함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위 37,650,000원에 포함

**■ 사업비 환수: 37,650,000원(용도 외 사용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 7,530,000원(용도 외 사용금액의 20%)**

마. 피고는 2019. 8. 23. 위 의결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제재조치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9. 5. 이의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9. 10. 4.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27조, 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2016. 10. 13. 보건복지부예규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건의료 관리규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제6호 (다)목, 제11항 [별표7], 제33조의3 제1항 [별표6]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하여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37,650,000원의 사업비 환수처분 및 7,530,000원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부과처분'이라 하고, 이를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9호증, 을 제1 내지 5,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상대방은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이고, 제3자인 원고에게는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나.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



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19502 판결 등 참조).

#### 다. 판단

구 과학기술기본법은 제11조 제2항에서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호에서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하고(제2호),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제3호)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과학기술기본법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관리규정은 연구자의 신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도록 하며(제9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출연한 연구개발비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 이를 관리·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2조, 제12조의2).

위와 같은 과학기술기본법령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살펴보면, 국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관인 산학협력단에 연구비를 출연하는 것은 산학협력단의 육성은 물론 그와 별도로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인력의 연구개발 역량 강화에도 그 목적



이 있고,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은 산학협력단 자체가 아닌 산학협력단에 소속된 연구팀의 연구개발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산학협력단은 연구비의 공식적 지원 대상이자 연구비 관리·집행의 대외적 주체로서 협약 당사자로 되어 있을 뿐이고, 협약으로 인한 실질적 이해관계는 해당 연구개발의 수행주체인 연구팀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2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비를 환수한 경우 및 제11조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은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지 아니한 채 환수 사업비 37,650,000원 및 제재부가금 7,530,000원을 납부하고 원고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임을 통지하였음이 인정된다.

원고는 자신이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부과처분에 따라 해당 사항이 관련 기관에 통보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될 뿐만 아니라 원고 자신이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에 환수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 연구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지위에 놓이는 직접적·구체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과 달리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이라는 동일한 처분사유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 1) 처분의 근거 및 처분사유 부존재

구 과학기술기본법 및 이 사건 관리규정에서는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경우에 대한 제재처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건비의 공동관리에 관한 제재처분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에 불과한 보건의료 관리규정에서 비로소 인건비의 공동관리에 대한 제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여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원고는 인건비 일부를 공동관리하였을 뿐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다. 한국인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는 공동으로 관리하면서 균등하게 지급하였고, 외국인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는 공동으로 관리한 사실이 없으며, 나머지 연구개발비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원비용 및 연구실 운영비용으로 모두 사용되었고 원고가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12조의3에서 규정한 학생관리비 통합관리 특례에 비추어 인건비의 공동관리 행위 및 인건비의 균등 지급 자체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2) 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원고가 연구개발비 일부를 용도 외 사용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인건비를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 연구원들의 동의하에 공동으로 관리하였을 뿐 연구비 유용 등 악의적인 목적이 없었던 점, 피고의 적발 전 용도 외 사용금액이 이미 회복된 점, 이 사건 연구과제 수행 결과 상당한 성과가 도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 나. 처분의 근거 및 처분사유 인정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연구실에서는 한국인 학생연구원들로 하여금 연구과제 인건비를 지급받을 계좌를 개설한 다음 통장과 비밀번호를 연구실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연구실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한 M 연구원이 학생연구원들의 계좌에 직접 지급된 인건비를 인출하여 자신 명의의 계좌(이하 '이 사건 연구실 계좌'라 한다)에 입금하여 통합 관리하였다.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서는 매월 급여 명목으로 박사과정 연구원에게는 약 월 180만 원, 석사과정 연구원에게는 약 월 150만 원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외국인 학생연구원들의 경우 원고의 연구실에서 인건비 계좌를 제출받지는 않았지만,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서 외국인 학생연구원들의 등록금을 먼저 납부한 다음 학생연구원의 계좌에 인건비가 지급되면 급여 명목의 월 60~7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등록금 상환 및 연구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다.

나) 이 사건 연구과제에 등록된 참여연구원 5명과 해당 연구원들이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인건비 및 연구수당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성명 | 학위과정 | 참여기간                          | 참여율(%) | 총지급액(원)    | 연구수당(원) | 합계(원)      |
|----|------|-------------------------------|--------|------------|---------|------------|
| J  | 박사   | 2016. 4. 1. ~<br>2017. 3. 31. | 40     | 12,000,000 | 810,000 | 12,810,000 |
| L  | 박사   | 2016. 4. 1. ~<br>2016. 8. 31. | 30     | 3,750,000  | 585,000 | 9,935,000  |
|    |      | 2016. 9. 1. ~<br>2017. 3. 31. | 32     | 5,600,000  |         |            |
| K  | 석사   | 2016. 4. 1. ~<br>2017. 3. 31. | 25     | 5,400,000  | 450,000 | 5,850,000  |
| H  | 박사   | 2016. 4. 1. ~<br>2016. 8. 31. | 15     | 1,875,000  | 720,000 | 6,970,000  |
|    |      | 2016. 9. 1. ~<br>2017. 3. 31. | 25     | 4,375,000  |         |            |
| I  | 박사   | 2016. 4. 1. ~<br>2016. 8. 31. | 12     | 1,500,000  | 585,000 | 2,085,000  |





|            |            |           |                   |
|------------|------------|-----------|-------------------|
| <b>합 계</b> | 34,500,000 | 3,150,000 | <b>37,650,000</b> |
|------------|------------|-----------|-------------------|

다) 원고의 연구실에서는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이 사건 연구과제를 포함하여 4건의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당기간 동안 전체 연구과제에 관하여 한국인 학생연구원 J, L, K의 계좌로 지급된 인건비 내역 및 해당 학생연구원들이 연구실에서 실제로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은 아래와 같다.

| 성명 | 연구개발비로 지급된 인건비(원) |           |           |           |            | 실제 지급받은 인건비(원) | 차액(원)     |
|----|-------------------|-----------|-----------|-----------|------------|----------------|-----------|
|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연구재단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 기타 정부부처   | 소계         |                |           |
| J  | 12,810,000        | 6,160,000 | 500,000   | 2,180,000 | 21,650,000 | 21,587,870     | -62,130   |
| L  | 9,935,000         | 1,915,000 | 500,000   | 2,180,000 | 14,530,000 | 21,577,870     | 7,047,870 |
| K  | 5,850,000         | 5,160,000 | -         | -         | 11,010,000 | 17,977,870     | 6,967,870 |

라)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서 2016. 4. 1.부터 2017. 3. 31.까지 외국인 학생연구원 H, I에 관하여 지출된 총액 및 해당 학생연구원들이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 입금한 총액은 아래와 같다.

| 성명 | 출금(원)<br>*등록금 납부 및 급여 지급 | 입금(원)      | 차액(원)       |
|----|--------------------------|------------|-------------|
| H  | 4,113,500                | 14,153,690 | -10,040,190 |
| I  | 6,787,300                | 13,507,095 | -6,719,795  |

마)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서는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M 연구원 등의 인건비, 연구실 비품 구입비, 연구실 워크샵 비용, 식사 및 간식비, 교통비, 통신비, 학회 참석 비용 등이 지출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5, 7, 10 내지 16, 27, 28, 32호증, 을 제4 내지 9, 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



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1조의2 제7항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 등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한편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관리규정 제12조 제5항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서는 '학생인건비' 비목의 사용용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수당' 비목의 사용용도를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으로 규정하면서 비고 제2항에서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서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수당과 별도로 '연구활동비' 비목의 사용용도로 공공요금, 학회·세미나 참가비를, '연구과제추진비' 비목의 사용용도로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기기·부품의 구입·유지비, 회의비, 식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비목별 계상기준 등의 내용은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과제협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에 적용되는 보건의료 관리규정 및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다.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구개발비 중 학생인건비 및 연구수당이 이 사건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



되어 귀속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고가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와 연구수당을 취합하여 이 사건 관리규정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비목별 사용용도에 반하여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과제추진비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연구실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거나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급되도록 한 것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또한 인건비가 지급대상인 학생연구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못하고 연구실에서 이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은 이 사건 관리규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후적·결과적으로 공동관리된 돈 중 일부가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용도에 어긋나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서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M 연구원을 통하여 이 사건 연구과제에 참여한 한국인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연구수당 전부를 공동관리하고 외국인 학생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 상당 부분을 다시 지급받아 마찬가지로 공동관리하면서 연구실 공동경비 등으로 집행하여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

원고의 행위가 위와 같이 구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인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이 보건의료 관리규정에만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의 법률유보원칙 또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배 관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은 보건의료 관리규정이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법규명령으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특례는 이 사건 관리규정 제12조의3에 따라 지정된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는 것이고, B대학교는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이 종료된 후인 2017. 7. 7. 비로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신규 지정되었으므로(갑 제26호증) 원고가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인건비를 공동관리한 행위가 위 규정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여지도 없다.

####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두11083 판결 등 참조).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9항은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에서는 구체적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제5호 (다)목에서는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라)목에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건의로 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6호 (다)목에서도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



센트 초과인 경우' 참여제한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면서도, [별표 7]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등에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9항의 위임에 따른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라)목의 처분기준은 비록 법규명령이기는 하나, 모법의 위임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유형의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그 규모나 기간,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벌받은 다른 사정, 행위자의 개인적 사정 및 위반행위로 얻은 불법이익의 규모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적절한 참여제한의 기간을 정하여야 하므로, 그 기간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최고한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1982 판결의 취지 참조).

2) 앞서 본 사실관계와 갑 제2, 17, 18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과제에 관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관리·사용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에 따라 연구책임자인 원고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이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학생 인건비의 충실한 지급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실 방지 등의 공익에 비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라)목에서는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참여제한기간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5년으로 정하고 있고, 피고는 이에 따라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위 규정은 (가)목 내지 (다)목과 달리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용도 외 사용행위의 태양 및 경중 등을 불문하고 학생인건비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제한 기간의 상한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별 참여제한기간 중 위와 같이 5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해외로 누설·유출한 경우'(제2호) 뿐인데, 위와 같은 행위 태양은 연구개발과제에 따른 성과를 무단으로 유용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관한 공익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제재의 수준이 다른 행위태양에 비하여 과중한 측면이 있다.

② 원고의 연구실에서는 한국인 학생연구원들에게 연구과제에 따라 지급되는 인건비의 편차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월 인건비를 지급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한국인 학생연구원 중 L, K은 참여한 여러 연구과제에서 지급된 인건비 이상의 금액을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서 실제로 지급받았으며, J도 연구과제에서 지급된 인건비와 실제 지급받은 인건비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사건 관리규정 제27조 제1항 제5호 단서 및 보건의료 관리규정 제33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위 학생연구원들의 인건비가 회수 및 재분배를 거쳐 공동관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중 상당 부분이 적발 전 인건비로 실제 지급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이상 위 규정에서 정



한 감경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③ 외국인 학생연구원인 H과 I이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동안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해당 계좌에서 2016학년도 2학기 및 2017학년도 1학기 등록금 등으로 출금된 금액에 비해 많기는 하다. 그러나 H은 6년 동안 원고의 연구실에 근무하면서 초반에는 연구과제로부터의 인건비 지급이 없는 상황에서 연구실에서 등록금과 월 급여 60~7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서 먼저 등록금이 납부된 다음 외국인 학생연구원들이 인건비를 지급받아 이를 지속적으로 상환하여 왔던 점을 고려하면, 위 연구기간 동안의 입·출금 내역만으로 위 학생연구원들이 납부된 등록금을 크게 상회하는 금액을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 입금하여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④ 이 사건 관리규정 제12조의3은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할 현실적인 필요성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인정하는 특례 제도를 두고 있고, B대학교는 이 사건 연구과제의 연구기간 종료로부터 약 3개월 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되었다.

⑤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인데, 상당수의 연구과제가 국가로부터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이루어지는 연구 환경에 비추어 볼 때 5년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연구자인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은 상당히 중대하다고 할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참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학교나 기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사업에 참여할 기회가 배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다만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부과처분에서 용도 외 사용금액으로 인정된 연구개발비 전액인 37,650,000원의 사업비를 환수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의 20%에 해당하는 7,530,000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로 정한 것은 이 사건 관리규정 [별표 5], [별표 6]에서 정한 기준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그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것보다 적은 금액에 해당한다. 이에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연구실 계좌에서의 연구개발비 관리 태양 및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을 제한하려는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B대학교 C 산학협력단에 대한 이 사건 환수처분 및 부과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환우

              판사      박남진

              판사      지선경





## 별지

### 관계 법령 및 규정

#### ▣ 구 과학기술기본법(2020. 6. 9. 법률 제17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 ②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정부는 연구기관과 연구자에게 최상의 연구환경을 조성하는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3.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도나 규정을 마련할 경우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각 부처가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이하 "기획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기획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등을 대행하는 자(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획등의 수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관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하여는 10년)의 범위에서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출연하거



나 보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각각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해당 사항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 1. 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
  - 2.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 경우
  - 3.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
-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 ⑨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별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제1항 단서에 따른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참여제한기간 및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 등에 관한 기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6. 7. 22. 대통령령 제27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연구개발비의 지급)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 ⑤ 연구개발비의 비목은 직접비 및 간접비(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에 공통적으로 들지만 개별 연구개발과제에서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구성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에 참여하는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관리를 위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비의 지출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하여야 하며, 연구비카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의 계획서를 말한다)상의 연구목적 및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대학, 학연협동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석사·박사과정을 운영하는 특정연구기관 중에서 제14조에 따른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결과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2조제5항에 따른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를 연구관리 부서에서 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이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라 한다)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을 지정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정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해당기관에서 사용한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에 대하여 제1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산(精算)을 아니한다.
-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대하여 학생인건비 사용현황,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등을 연 2회의 범위에서 점검하여야 한다.
- 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당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지정을 취소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일 이후 제19조제2항에 따라 정산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제3항에 따른 정산면제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제1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직접비 중 학생인건비의 사용



잔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연구책임자가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2. 연구책임자 단위로 관리하고 있는 학생인건비의 사용잔액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 제27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①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⑩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함께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⑪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 제27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①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7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제12조제5항 관련)

| 비목  | 세목     | 사용용도   | 계상기준   |
|-----|--------|--|--|
| 직접비 | 학생 인건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br>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br>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br>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     | 연구활동비  |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체재비를 포함한다)<br>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                                |



|         |   |  |
|---------|---|--|
|         | <p>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p> <p>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 조사·분석·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p> <p>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p> | <p>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p>   |
| 연구과제추진비 | <p>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p> <p>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p> <p>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p> <p>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p>  | <p>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p> <p>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p> <p>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p> |
| 연구수당    | <p>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p>   | <p>소관 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p>  |

비고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별표 5]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 환수사유                         | 환수기준            |
|------------------------------|-----------------|
|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 5천만원 이하        | 50%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구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2016. 10. 13. 보건복지부예규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및 실시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6.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참여



제한 기간을 1년 이상 감경할 수 있다.

가.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3년 이내

나.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사업비를 환수하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결정사실 및 환수금액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받은 기관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전문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 ⑩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유별 사업비 환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경중과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33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등)

-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제5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별표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33조의3제1항 관련)

-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 제재부가금 부과율 |
|----------------|-----------|
| 1억원 미만         | 20%       |

-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21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표 7]

제재조치 및 사업비 환수기준(제33조제1항, 제11항 관련)

1. 제재 대상사유별 조치사항

| 참여제한 사유별 세부기준   | 참여제한 기간 | 사업비 환수기준       |
|---|---------|----------------|
| 5.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br>※ 용도 외 사용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감 가능 | 5년 이내   | 해당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
| 다. 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 5년 이내                                |         |                |
| 1) 연구개발비를 횡령, 편취(騙取), 유용(流用) 등 부정 집행한 경우<br>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나 연구기관이 편취한 경우  | 5년      | 편취한 금액         |
| 나) 참여연구원이 아닌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         | 해당 인건비         |
| 다) 연구장비·재료를 거짓으로 구입·설치·임차하거나 비용을 과다계상하여 집행한 경우                                  |         | 거짓·과다계상 집행금액   |
| 라)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연구책임자가 회수하여 재분배한 경우  |         | 회수한 금액         |
| 마)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는 활동으로 연구활동비를 집행한 경우                                      |         | 해당금액           |
| 바) 그 밖에 연구개발비를 의도적으로 부정 집행한 경우  |         | 부정집행금액         |